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957
----------	-------

발의연월일 : 2025. 6. 20.

발 의 자 : 최민희 · 허성무 · 김우영
노종면 · 이병진 · 김 현
황정아 · 정동영 · 박민규
조인철 · 이정현 · 한민수
이훈기 의원(13인)

제안이유

인공지능기술은 단순히 특정 기업의 이익을 넘어 국가의 경제 성장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전략기술로서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고 육성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미국의 경우 오픈AI, 소프트뱅크, 오라클 등이 합작하여 인공지능 인프라 등에 약 730조원을 투자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하였고, EU는 ‘AI 기가팩토리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약 30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중국은 효율적 알고리즘으로 딥시크 등 고성능 인공지능모델을 구현하여 인공지능경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등 글로벌 인공지능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공지능 관련 기본법을 제정(2025년 1월)하여 인공지능산업 육성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인공지능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육성하기 위한 내용에 관하여는 다소 부족하

게 규정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기본법의 시행과 더불어 인공지능산업의 과감한 진흥에 방점을 둔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범국가적 산업 육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 인공지능 강국으로의 도약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공지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주권을 확보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며 인공지능 강국으로의 도약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인공지능기술·산업 육성을 위하여 인공지능산업경쟁력강화전략계획의 수립,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의 지정 및 조성·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인공지능신기술 연구사업의 추진·실증 및 확산 등을 위하여 인공지능신기술의 지정, 인공지능전략사업에 관한 특례, 인공지능신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시범사업의 실시, 기업공동연구소 설립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인공지능산업 인력 육성시책 마련, 해외 우수인력 유치, 인공지능산업 분야 인력 수급동향조사, 인공지능산업 지역인력 확보, 인공지능 청년인력 양성·활용, 인력양성사업 추진 및 정보 협력, 우수 기업 및 전문양성인에 대한 금융 등의 지원 등 인공지능산업 인력양

성에 관한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마.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 지원 및 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의 지정 및 지원,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인공지능산업진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조세 등에 관한 특례, 고용보조금의 지급 등 재정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주권을 확보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며 인공지능 강국으로의 도약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공지능산업을 말한다.
2.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인공지능사업자를 말한다.
3. “국가인공지능위원회”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말한다.
4.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란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인공지능산업의 융·복합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사업자,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이하 “인공지능사업자등”이라 한다)와 그 지원시

설을 상호·연계하여 조성하는 지역(인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지역을 연계하여 조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5.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공지능기술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②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2장 인공지능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제4조(인공지능산업경쟁력강화전략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1년마다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산업 경쟁력강화전략계획(이하 “전략계획”이라 한다)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변경 및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략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방향
2.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전망
3. 인공지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자원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 확대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와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에게 전략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전략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 지역을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지역을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 지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공익상 지정해제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 조성·운영 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공지능산업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직접 설치하여야 한다.

1. 전력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국가인공지능컴퓨팅센터·데이터센터, 초고성능컴퓨터 및 첨단그래픽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컴퓨팅 인프라에 관한 시설
3.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에 연결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4. 그 밖에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에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에 입주한 인공지능사업자등(이하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입주자”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입주자가 제공하는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설치
· 운영

2. 부지의 조성 및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
른 국내복귀기업의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 내 설비투자

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
술단지의 조성사업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
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8. 그 밖에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의 고도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3장 인공지능신기술 연구사업의 추진·실증 및 확산 등

제7조(인공지능신기술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주
적 인공지능기술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인
공지능기술이 신규성·진보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인
공지능산업에 보급·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술을 새로운 인공지능기술(이하 “인공지능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공지능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해당 인공지능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인공지능기술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신기술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인력 공급, 세제·금융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신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신기술 관련 테스트베드(인공지능신기술 및 이를 활용한 인공지능제품·인공지능서비스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신기술을 개발한 인공지능사업자등이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경우 시설 및 인프라의 우선 사용, 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인공지능전략사업에 관한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신기술 및 인공지능산업과 관련하여 국가안보 또는 사회·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인공지능전략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공모 외의 방법으로 인공지능신기술 연구개발과제(이하 “인공지능전략과제”라 한다)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전략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인공지능전략과제로서 인공지능신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후속 연구개발과제로의 연계 등 추가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전략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현금 부담비율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전략사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전략사업이 「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특정 평가 대상이 된 경우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인공지능신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① 정부는 인공지능신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성과가 창업 및 사업화 등으로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확산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신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한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출자금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인공지능신기술과 관련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를 희망하는 자의 출자금
3. 그 밖의 부대수입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전략사업에서 창출된 우수 연구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계·협력하여 기술개발, 실증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인공지능전략사업 또는 실증사

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인공지능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인공지능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공공구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신기술이 적용된 제품 또는 물품, 용역 및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전략사업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신기술 분야 사업화 유망기술 정보 통합관리·제공
2. 인공지능신기술 분야 기업수요에 대한 맞춤형 기술정보 제공
3. 인공지능전략사업 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4. 인공지능신기술에 관한 기술수요기업과 기술공급기관의 중개
5. 인공지능신기술을 활용한 기술창업 지원
6. 그 밖에 인공지능전략사업 성과의 활용 촉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⑨ 특허청장은 인공지능전략사업의 결과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특허출원 우선심사
2. 지식재산권 출원·관리 및 거래·사업화 촉진 지원
3.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

⑩ 제2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에의 출자, 제7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8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시범사업의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신기술 및 관련 서비스의 실증
2. 인공지능신기술 및 관련 서비스의 활용 사례 발굴
3. 인공지능신기술과 융합한 제품·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제11조(기업공동연구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신기술의 신속한 육성·확보와 관련 연구개발성과의 효율적인 산업계로의 이전·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

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기업공동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인공지능기술의 원천기술을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인공지능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③ 그 밖에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인공지능산업 인력양성에 관한 지원사업 등

제12조(인공지능산업 인력 육성시책 마련)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인력양성 및 확보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연구인력을 육성하고 안정적인 연구 및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 인력의 육성과 양성을 위하여 연구업적이 뛰어난 연구인력에게 연구장려금 지급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사업이 인공지능 분야 인력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추진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분야의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위하여 산업계·대학·연구기관 등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 지원이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산업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2.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업의 수요에 따른 인력양성
3. 인공지능산업 분야 인력 교육과정 및 콘텐츠 개발
4. 인공지능산업 분야 인력의 경력개발 지원
5. 수요 기업과의 채용 연계를 고려한 훈련과정
6.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분야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

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사업 추진을 지원하지 아니한 경우

⑧ 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업무,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7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 등) ① 정부는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증발급 요건의 완화
2. 이민 절차의 완화

3. 근로조건과 처우의 개선

4. 범정부적 추진 체계의 마련

5. 그 밖에 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육성에 필요한 지원

③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산업 분야 해외 우수 외국인 인력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하여 해외인재의 적정 유치규모를 검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검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전망에 따라 확보가 필요한 기술목록

2. 제1호에 따른 기술을 보유한 인력에 대한 국내 교육기관 및 공급 가능 규모

3. 제1호에 따른 기술을 보유한 인력에 대한 산업계의 수요

4. 그 밖에 해외인재의 적정 유치규모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인공지능산업 분야 인력 수급동향조사) ① 정부는 인공지능산업 분야 인력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인공지능산업 관련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활용을 위하여 해외 기관 등과 협력하여 해외 전문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산업 인력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관리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인공지능산업 지역인력 확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지역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의 투자계획과 연계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인력양성
2. 지역 내 교육기관과 기업이 연계한 인력양성
3. 지역 외 인력의 유입을 위한 육아·교육·의료 등 주거환경 조성
4.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지역인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의 사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인공지능 청년인력의 양성·활용) ① 정부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청년인력의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년인력의 양성·활용을 촉진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분야 인턴제도 운영 등 일경험의 제공
2. 인공지능산업 분야 취업정보 제공 및 경력관리에 관한 컨설팅 등 일자리 지원 사업
3. 인공지능산업 내 청년인력에 대한 우대 촉진
4. 인공지능산업 분야 청년인력의 양성·활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청년인력의 양성·활용 촉진에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인력양성사업의 추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 사내교육 등 자체 인력양성 과정에 대한 지원
2. 전문인력 지원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우수 인재의 지속적인 확보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4. 제13조에 따른 해외인력의 유치 지원
5. 그 밖에 기업의 인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의 사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그 사업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인력양성사업 정보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인력양성사업 간 중복을 제거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 현황, 실적 및 수강생 정보 등을 상호 공유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9조(우수 기업 및 전문양성인에 대한 금융 등의 지원) ① 정부는 인공지능산업 인력양성 및 채용실적이 우수한 기업 및 전문양성인(인공지능산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공지능산업인재 전문양성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금융상의 지원

2.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또는 보조금의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인력양성·채용 실적,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자 및 전문양성인의 선정기준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 및 재정 지원

제20조(인공지능 인프라 확충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단 그래픽처리장치,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

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초고성능컴퓨팅,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전력 공급 및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
2.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의무

제22조(전력계통영향평가 기준 완화에 관한 특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하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전력계통영향평가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3조(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의 지정 및 지원) 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를 지정한다. 이 경우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인공지능사업자의 투자계획, 데이터센터 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지정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1. 전력공급시설(송전선로, 변전소, 변환소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2. 용수공급시설(용수관로, 가압장, 정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발전 시설

4. 공원 및 공동구

5. 그 밖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에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의 지정 신청, 지정, 지정 변경·해제의 절차·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 조성·운영 지원 사업
2.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 목적, 추진 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경제 안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인공지능산업진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①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산업진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회계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5. 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6.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7. 차입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외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산업을 위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
2.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의 컴퓨팅 시설 구축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3.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설치
4.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 육성시책 실행을 위한 사업
5.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6. 인공지능산업 인력의 양성 및 확보를 위한 사업
7. 인공지능산업 육성 전략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8. 특별회계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9.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0.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
11.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특별회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운영한다.

제26조(조세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수출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및 주민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인공지능산업의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인공지능산업의 사업화 및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장비(중고품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에 투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27조(고용보조금의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보조금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